

## 2025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

# 검토보고서

2024. 10. .

자치행정위원회

## 2025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안

#### 1. 제안경과

○ 본 출연안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 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 시청자의 미디어 활용 교육 강화와 미디어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25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의 시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개요
  - 위 치 : 다산중앙로 82번안길 146
  - 규 모 : 지상 1~3층/지하1층 (연면적 4,222㎡ , 건축면적 934.11㎡)
  - 운영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
  - 주요시설 : 디지털미디어교육실, 드론촬영체험관, 편집실, 사무실 등
  - 주요사업
    - •미디어 활용교육 지원 :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교육 등
    -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대관·대여 지원, TV 및 라디오 제작단 운영
    - •미디어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
    - •온라인 미디어사업 지원 : 학교 및 기관 원격수업 지원, 온라인 교육, 비대면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등
- 2025년 출연 계획
- 출연 대상 : 시청자미디어재단
- 출연 금액 : 470,560천원

-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제5조에 따라 센터 운영비 중 60%는 방통위, 40%는 남양주시가 각각 분담
- •2025년 센터 운영비 1,507,200천원의 40%인 602,900천원을 시에서 분담
- •시 분담금 602,900천원 중 파견인력 2명 인건비(132,340천원)를 제외한 금액

#### 《 2025년 센터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인건비 (A)	경상비 (B)	운영비 (A+B)	비고	
총 소요액	860,200	647,000	1,507,200		
국비 분담	661,700	242,600	904,300	운영비의 60%	
지자체 분담	198,500	404,400	602,900	운영비의 40%	

#### □ 향후일정

○ 2025년 운영 분담금(출연금) 본예산 편성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관련부서 : 홍보기획관

#### 5. 검토의견

본 출연안은 2018년에 체결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 제5조에 따라 동 센터의 2025년도에 소요되는 운영비 분담금 4억7,056만 원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협약 당시 운영비 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60%를, 우리 시가 40%를 각각 분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고, 우리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 2명의 차년도 인건비 1억 3,234만원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제2항에 따라 우리시가 지급하기에 이를 제외한 출연금의 규모는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각종 미디어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미디어 활용교육과 방송제작 조력 등 남양 주시민들의 방송과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 의 역할을 감안할 때, 본 운영비의 출연은 타당하며 향후 미디어 전문교 육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 〈 연도별 출연금 예산지원 내역 〉

(단위 : 천원)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정)
2,876,970	240,000	381,100	434,470	443,460	449,060	458,320	470,560

□ 참고자료 :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 운영에 관한 협약

##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남양주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하여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다.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남양주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하 '제단'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력분야)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남양주시, 재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필요한 경우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 결할 수 있다.
- ①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적정공간을 제공하고, 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해 협조·지원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한다. ③ 재단은 미디어교육시청자 방송제작소외계층 방송접근 지원 등 센터 사업 관리·우영한다.
- 제3조(설립공간) ① 남양주시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공공주택자구 내 문화공원 일원에 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전용공간을 신축, 재단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용료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센터 설립 실무혐의회의 구성)

- ① 센터 설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남양주시, 재단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실무협의회는 센터 설립 완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②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 체결 이외의 전문기관을 실무협의회에 추가할 수 있다.
- 제5조(운영비 등의 분담) 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이때, 운영비는 신규 시설장비비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60%, 남양주시가 40% 각 분담하되 운영비의 변동사항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상호 혐의하여 조정하다.
-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재단은 센터 관리·운영하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재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되, 일부를 남양주시로부터 파견 받을 수 있다. ②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 시 재단은 정부의 권장정책에 따라 경기 거주도민을 포함하여 지역인재 채용 비율 준수에 노력한다.
- 제7조 (발전협의회 구성) ① 재단은 센터 운영에 대한 지역 참여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센터 발전협의회를 둔다.
  - ② 발전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기관, 미디어 관련 학계·단체·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하며, 방송통신위원회·경기도·남양주시의 추천 및 의견을 반영한다. 이때 경기도와 남양주시에서 50%를 추천한다.

- ③ 발전협의회는 센터의 사업·정책·예산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재단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 제8조(해석) 본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9조(분쟁)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제10조(협약서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4부 작성하여 당사자 별로 아래에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0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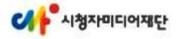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

시장 조 광

부위원장 허 욱





도지사 이 재 명

이사장 신 태 섭

## 붙임1

##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u>제17조제2항</u>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제20조(보수지급기관) ①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 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4.7.]
  - ③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